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<sup>,</sup> 의결

**안 건 번 호** 제2022-019-161호

안 건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

의결연월일 2022. 11. 30.

# 주 문

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6,6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2.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

# 이 유

# I. 기초 사실

온라인 쇼핑몰( )를 운영하는 피심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2020. 8. 5. 시행, 법률 제16930호, 이하 '보호법'이라 한다.)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

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# 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피심인명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대표자 성명	주소	종업원 수(명)

# Ⅱ. 사실조사 결과

#### 1. 조사 배경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종합포털(privacy.go.kr)에 유출 신고('21. 11. 6.)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·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('22. 2. 21. ~ '22. 9. 5.)하였으며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## 2. 행위 사실

#### 가. 개인정보 수집현황

피심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'22.2.24.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.

#### < 개인정보 수집현황 >

구분	항목	수집일	건수
회원정보	(필수) 아이디, 비밀번호, 이메일 등 (선택) 주소, 휴대전화번호, 일반전화	'20. 12. 29. ~ '22. 2. 24.	

#### 나. 개인정보 유출 경위

### 1) 유출 경과 및 대응

일시		피심인의 유출 인지·대응 내용
'21. 11. 5.	11:44	구글 검색엔진에서 사전체험단 이벤트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검색된다는 민원 접수
'21. 11. 5.	11:59	구글 검색엔진에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사실 확인
'21. 11. 5.	13:34	이벤트 참여자 개인정보가 기재된 페이지의 읽기 권한이 '비회원 이상'으로 설정된 사실 확인
'21. 11. 5.	14:27	구글에 개인정보 노출 관련 페이지 URL 삭제 요청
'21. 11. 5.	15:30	DB에서 이벤트 참여자 개인정보 삭제
'21. 11. 6.	15:13	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이용자 통지

## 2) 유출규모 및 경위

(유출항목 및 규모)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 30명의 아이디·이름·주소·연락처

(유출 경위) '21.9.7.부터 '21.11.5.까지 이벤트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의 읽기 권한을 '관리자'가 아닌 '비회원 이상'으로 설정하여 구글 등 검색엔진에서 관련 키워드 검색 시 이벤트 참여자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.

# 3. 개인정보의 취급.운영 관련 사실관계

# 가.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은 '21.9.7.부터 '21.11.5.까지 이벤트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의 읽기 권한을 '관리자'가 아닌 '비회원 이상'으로 설정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.

#### 나. 유출 통지·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· 신고한 사실이 있다.

#### 4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'22. 9. 6.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'22. 10. 7.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## Ⅲ. 위법성 판단

#### 1. 관련법 규정

가. 보호법 제29조는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'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(마목)'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"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·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「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제2021-3호, 이하 '고시') 제4조제9항은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, P2P,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나.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(이하 "유출등"이라 한다)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 정보 항목(제1호),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(제2호),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(제3호)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(제4호),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(제5호)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·신고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#### 2. 위법성 판단

# 가.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(보호법 제29조 (안전조치의무))

피심인이 이벤트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의 읽기 권한을 '관리자'가 아닌 '비회원 이상'으로 설정하여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,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.

**나. 유출 통지·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**{보호법 제39조의4(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 고에 대한 특례)제1항}

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·신고 한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.

#### < 피심인의 위반사항 >

위반행위	법률	시행령	세부내용(고시 등)	
안전조치의무 위반	보호법 §29	§48의2① 제2호	・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(고시§4⑨)	
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	보호법 §39의4①	-	•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·신고한 행위	

## Ⅳ. 처분 및 결정

#### 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및 같은 법 제39조의4(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)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·제12호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, 같은 법 시행령 [별표2] '과태료의 부과기준' 및 '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'(2021. 1. 27.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결, 이하 '과태료 부과지침'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# 가. 기준금액

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 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.

<	「보호법」	시행령	[별표2]	2.	개별기준	>
---	-------	-----	-------	----	------	---

	위 반 사 항	근거법령	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(만원)		
			1회	2회	3회 이상
자.	법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, 제28조의4 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ᆸᅥᄀᇎᄌ	600	1,200	2,400
도.	법 제39조의4제1항(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이용자·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경우	ᅠᅢᆌᇹᆽ	600	1,200	2,400

# 나.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

# 1) 과태료의 가중

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'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2]의 가중기준(▲조사방해,

▲위반의 정도, ▲위반기간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, 유출 통지·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는 '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'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%를 가중한다.

## 2) 과태료의 감경

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'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1]의 감경기준(▲당사자 환경, ▲위반정도, ▲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, ▲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, ▲사업규모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 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,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와 유출 통지·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는 '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' 및 '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'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%를 각각 감경한다.

#### 다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 금액에서 가중·감경을 거쳐 총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 과태료 산출내역 >

위반행위(세부내용)	기준금액	가중액	감경액	최종 과태료
<b>안전조치의무 위반</b> (접근통제)	600만 원	-	300만원	300만원
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	600만 원	60만원	300만원	360만원
	660만원			

#### 3. 결과 공표

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'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'(2020. 11. 18.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) 제2조(공표요건)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(제4호)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

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							
위반행위를 한 자	위반행	위의 내용	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				
10812 U N	위반조항	위반내용	처분일 자	처분내용			
	법 제29조	안전조치의무 위반	2022.11.30	과태료 부과 300만원			
법 유출 통지·신고에 제39조의4제1항 대한 특례 위반		2022.11.30	과태료 부과 360만원				

# 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및 같은 법 제39조의4(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)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제2항 제6호·제12호의3 및 같은 법 제66조(결과의 공표)제1항에 따라 과태료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# 2022년 11월 30일

부위원장 최 장 혁 (서 명) 원 강 정 화 (서 명) 위 (서 명) 위 원 고 성 학 위 원 백 대 용 (서 명) 위 (서 명) 서 종 식 원 염 흥 열 (서 명) 위 원 위 이 희 정 (서 명) 원 위 (서 명) 원 지 성 우